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3. 11. 26  
도시건설위원회

##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3년 11월 10일 영등포구청장 제안
- 나. 회부일자: 1993년 11월 13일
- 다. 상정일자: 1993년 11월 26일(제22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건설국장 조남성)

### 가. 제안이유

- 도로법(법률 제4545호, 1993. 3. 10개정)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13958호, 1993. 8. 14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안 제3조)
- 점용료등의 기준(안 제5조)
- 점용료등의 감면(안 제6조)
- 점용료등의 반환규정(안 제7조)
- 수수료의 징수(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재한)

○본개정조례(안)은 도로법 道路法(法律 제4545호, 93. 3. 10 개정) 및 同 施行令(대통령령 13958호, 93. 8. 14 개정)이 改正됨에 따라 國道를 제외한 道路에 대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도록 規定한 동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改正되는 全文改正案으로

첫째, 公共 또는 公益을 위한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 事業分野는 全額減免하며 公益事業을 위한 점용에 對하여는 점용료 全額의 50%를 減免하도록 規定하였으며,

둘째, 地上設置物과 地下設置物의 점용료 賦果는 差等を 두어서 地下는 낮은 料率로 適用하고

셋째, 기존 條例의 道路점용료 算定基準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計算하여 점용료를 賦

果하였으나 改正案은 公示地價 및 土地 等の 評價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適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러나 개정조례(안)이 규정한 점용료 인상 폭이 년 20% 안팎으로 예상되어 공급리나, 물가상승율을 크게 상회 주민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도록 규정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배부 참조

## 5. 심사결과: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7
----------	-----

제출년월일: 1993. 11.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1. 제 안 이 유

- 도로법(법률 제4545호, 1993. 3. 10개정)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13958호, 1993. 8. 14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 요 골 자

### 가. 점용료 산정 기준 변경

-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안 제3조)

### 나. 점용료등의 조정

-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10% 이상 인상 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정(안 제5조)

### 다. 점용료등의 감면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은 전액면제(안 제6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 사업은 50%감면(안 제6조)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안 제6조)

### 라. 점용료 반환 규정

○도로점용을 허가한 후 허가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 때 (안 제7조)

마. 수수료의 징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징수(안 제8조)

3. 관련 법규

○도로법 제43조(점용료의 징수)① 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부당이득금·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 2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말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2.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담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4.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1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②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령의 발주설계서에 기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4.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일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부당이득금·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감면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내부 위임한다.

제10조(세입구조) 구가 징수한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1. 국도(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및 폭 20m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

2. 폭20m미만 도로(폭 20m미만 도로중 시소유도로는 제외한다)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징수교부금) ① 구가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할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 교부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대분기말 실적율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12조(이의신청)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료 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점 용 료 산 정 기 준 표 (제3조관련)

(금액단위: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 주		1 개	1 년	1,350
	전 주 와 유 사 한 것				2,000
	공 중 전 화				54,200
	송전탑·변압기·저장고·기타	점용면적 1 m <sup>2</sup>	1 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하수도관 ·가스관·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수도관·하수 ·가스관 ·송유관·송 열관·전기 및 통신 시설관	직경 0.1m 이하	길이 1m	1 년	850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1,750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3,500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5,250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7,000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8,750
		직경 1.0m 초과			17,500
		기타의 관			직경 0.1m 이하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2,600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5,200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7,850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10,450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13,100		
	직경 0.1m 초과		26,20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3. 광고탑·광고판·간판·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치·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	일시 설치한 것 (1개월미만점용)	표시면적1m <sup>2</sup>	1 일	300	
		기 타	표시면적1m <sup>2</sup>	1 년	88,400	
	사 설 안 내 표 시		1 개	1 년	73,65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점용면적1m <sup>2</sup>	1 일	300	
		광고또는홍보용도	표시면적1m <sup>2</sup>		300	
		기 타 의 용 도	점용면적1m <sup>2</sup>		300	
	아 치	도 로 횡 단	표시면적1m <sup>2</sup>	1 년	176,800	
		기 타			88,4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 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1 층 인 건 축 물	점용면적1m <sup>2</sup>	1 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층 인 건 축 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 층 인 건 축 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 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 입 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m <sup>2</sup>	1 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 층 인 건 축 물	점용면적1m <sup>2</sup>	1 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 층 인 건 축 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 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육교 상가,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 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 판매대·구두수선대·가로 판매대	점용면적1m'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 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굴착 부분 기타	일 시 점 용 한 것	점용면적1m'	1일	30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m'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 재배	점용면적1m'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자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 평균 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m'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길이·표시면적 등이 1m 미만이인 경우에는 1m' 또는 1m로 산정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광고판·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합계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부과한다.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 : 1,445원→1,400원, 1,995원→1,950원)
6. 위 표의 제1호에는 수도·하수도·가스·송유·송열·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중 관시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한다.
7. 위 표의 제3호에는 같은 호에는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위 표의 제6호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전주·전주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이외의 점용물
  - 나.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 다.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 이외의 점용물
  - 라.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일시 점용한 것" 이외의 점용물
  - 마.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이외의 점용물
9.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10. 위 표의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는 점용료 산정총액이 연간 700,000원을 초과할 때는 700,000원으로 한다.
11.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 [별 표 2]

점용료 조정산식 (제5조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10% 이상 2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0}]
20% 이상 5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 이상 10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 이상 20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 이상 50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 이상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0}]

### 신 · 구조물 대비포

현 행(88. 5. 1 공포) (89. 7. 14 개정)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조는 도로법 제43조 제1항 및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조력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법 제80조의 2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 2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는 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0.5 제곱미터 미만은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 토지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⑥ 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년도별로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현행 제6항을 개정(안)제2항으로 변경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개정(안) → 제2항
제3조의 2(소액징수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 제7조 제1항



<p>현 행(88. 5. 1 공포) (89. 7. 14 개정)</p>	<p>개 정 (안)</p>
<p>제4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과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개정(안) → 제6조</p>
<p>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p> <p>①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p> <p>1. 점용기간이 1년이하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p> <p>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점용 허가를 하는 당해년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 회계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p> <p>3.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 별로 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부과 징수한다.</p> <p>4.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p>	<p>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p> <p>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②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 점용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p> <p>2.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 징수한다.</p> <p>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p> <p>④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제6조(징수)</p> <p>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②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① 개정(안) → 제4조 제①항</p> <p>② 개정(안) → 제4조 제④항</p>

<p>현 행(88. 5. 1. 공포) (89. 7. 14 개정)</p>	<p>개 정 (안)</p>
	<p>(신설)</p> <p>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p> <p>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신설)</p> <p>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p> <p>1.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복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li> <li>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li> <li>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복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li> <li>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li> <li>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li> </ol>

현행(88. 5. 1. 공포) (89. 7. 14 개정)	개정(안)
	<p>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사용 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li> <li>2. 공사용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li> <li>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li> </ol> <p>(4)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p>(신설)</p> <p>제7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li> <li>2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li> </ol>
	<p>(신설)</p> <p>제8조(수수료의 징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li> <li>2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li> </ol>
<p>제7조(권한의 위임)</p> <p>일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동장에게 내부 위임한다.</p>	<p>제9조(권한의 위임)</p> <p>일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 징수와 감면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내부 위임한다.</p>

<p>현 행(88. 5. 1 공포) (89. 7. 14 개정)</p>	<p>개 정(안)</p>
	<p>(신 설) 제10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 1 국도(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및 폭 20m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 2 폭 20m 미만 도로(폭 20m 미만 도로중 시소유도로는 제외한다)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p>
	<p>(신 설) 제11조(징수교부금) ① 구가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 교부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유 대분기말 실적율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 받는다.</p>
	<p>(신 설) 제12조(이의신청)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별표1)

**점 용 료 산 정 대 비 표**

(금액단위 : 원)

현 행	개 정(안)																																						
<p>1. 전기통신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 및 그 지지물과 유사한 공작물을 위한 점용 (산정방법) 인근의 토지거래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용 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이하 "점용면적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전주인 경우에는 1주당 단주는 500원, H형은 800원, 철탑은 1,000으로 하며, 지하인 경우에는 점용면적 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p>	<p>1. 전주, 공중전환,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것. (산정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점용물의 종류</th> <th colspan="2">기준단위</th> <th rowspan="2">점 용 료</th> </tr> <tr> <th>점용 단위</th> <th>기간 단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 주</td> <td style="text-align: center;">1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1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1,3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주와 유사한 것</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중전화</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54,2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td> <td style="text-align: center;">점용 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1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td> </tr> </tbody> </table>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전 주	1개	1년	1,350	전주와 유사한 것			2,000	공중전화			54,200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	점용 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전 주	1개	1년	1,350																																				
전주와 유사한 것			2,000																																				
공중전화			54,200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	점용 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p>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산정방법) 점용면적 가격의 100분의 3</p>	<p>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것 (산정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수 도 관</th> <th>직경 0.1m 이하</th> <th rowspan="10" style="text-align: center;">길이 1m</th> <th rowspan="10" style="text-align: center;">1년</th> <th style="text-align: center;">850</th> </tr> </thead> <tbody> <tr> <td>하 수 도 관</td> <td>직경 0.1m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750</td> </tr> <tr> <td>가 스 관</td> <td>0.2m 이하</td> <td></td> </tr> <tr> <td>송 유 관</td> <td>직경 0.2m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td> </tr> <tr> <td>송 열 관</td> <td>0.4m 이하</td> <td></td> </tr> <tr> <td>전 기 및 통 신 시 설 관</td> <td>직경 0.4m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5,250</td> </tr> <tr> <td></td> <td>0.6m 이하</td> <td></td> </tr> <tr> <td></td> <td>직경 0.6m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0</td> </tr> <tr> <td></td> <td>0.8m 이하</td> <td></td> </tr> <tr> <td></td> <td>직경 0.8m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8,750</td> </tr> <tr> <td></td> <td>0.2m 이하</td> <td></td> </tr> <tr> <td></td> <td>직경 1.0m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7,500</td> </tr> </tbody> </table>	수 도 관	직경 0.1m 이하	길이 1m	1년	850	하 수 도 관	직경 0.1m 초과	1,750	가 스 관	0.2m 이하		송 유 관	직경 0.2m 초과	3,500	송 열 관	0.4m 이하		전 기 및 통 신 시 설 관	직경 0.4m 초과	5,250		0.6m 이하			직경 0.6m 초과	7,000		0.8m 이하			직경 0.8m 초과	8,750		0.2m 이하			직경 1.0m 초과	17,500
수 도 관	직경 0.1m 이하	길이 1m	1년			850																																	
하 수 도 관	직경 0.1m 초과					1,750																																	
가 스 관	0.2m 이하																																						
송 유 관	직경 0.2m 초과					3,500																																	
송 열 관	0.4m 이하																																						
전 기 및 통 신 시 설 관	직경 0.4m 초과					5,250																																	
	0.6m 이하																																						
	직경 0.6m 초과					7,000																																	
	0.8m 이하																																						
	직경 0.8m 초과			8,750																																			
	0.2m 이하																																						
	직경 1.0m 초과	17,500																																					

현 행	개 정(안)																
	<p>(산정기준)</p> <table border="1"> <tr> <td rowspan="8" style="text-align: center;">기 타 의 관</td> <td>직경 0.1m 이하</td> <td rowspan="8" style="text-align: center;">길이 1년 1m</td> <td>1,300</td> </tr> <tr> <td>직경 0.1m 초과 0.2m 이하</td> <td>2,600</td> </tr> <tr> <td>직경 0.2m 초과 0.4m 이하</td> <td>5,200</td> </tr> <tr> <td>직경 0.4m 초과 0.6m 이하</td> <td>7,850</td> </tr> <tr> <td>직경 0.6m 초과 0.8m 이하</td> <td>10,450</td> </tr> <tr> <td>직경 0.8m 초과 0.2m 이하</td> <td>13,100</td> </tr> <tr> <td>직경 1.0m 초과</td> <td>26,200</td> </tr> </table>	기 타 의 관	직경 0.1m 이하	길이 1년 1m	1,300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2,600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5,200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7,850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10,450	직경 0.8m 초과 0.2m 이하	13,100	직경 1.0m 초과	26,200
기 타 의 관	직경 0.1m 이하		길이 1년 1m		1,300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2,600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5,200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7,850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10,450												
	직경 0.8m 초과 0.2m 이하				13,100												
	직경 1.0m 초과				26,200												

3. 광고탑, 광고판과 이들에 유사한 물건의 설치를 위한 점용

(산정방법)

점용면적 가격의 100분의 10. 다만, 일시적인 광고막 등 점용면적의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표시면적에 상당하는 점용면적 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3. 광고탑, 광고판, 간판,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광 고 탑 간 판	일시설치한 깃(1월미만 점용)	표시 면적 1㎡	1일	300
	기 타	표시 면적 1㎡	1년	88,400
시설 안내 표지판		1개	1년	73,65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 행사의 용도 로 일시설치 한 것	점용 면적 1㎡		300
	광고 또는 홍보 용도	표시 면적 1㎡	1일	300
	기타의 용도	점용 면적 1㎡		300
아 치	도 로 횡 단	표시 면적	1년	176,800
	기 타	1㎡		88,400

현행	개정(안)																					
<p>4.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p> <p>(산정방법)</p> <p>점용면적 가격의 100분의 10. 다만, 이들의 진출입 시설을 위한 공동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면적 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p>	<p>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p> <p>(산정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692 434 1241 1119"> <tr> <td rowspan="4">건축물</td> <td>1층인 건축물</td> <td rowspan="4">점용 면적 1m<sup>2</sup></td> <td rowspan="4">1년</td> <td>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td> </tr> <tr> <td>2층인 건축물</td> <td>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td> </tr> <tr> <td>3층인 건축물</td> <td>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td> </tr> <tr> <td>4층 이상인 건축물</td> <td>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td> </tr> <tr> <td colspan="3">진입로</td> <td></td> <td>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td> </tr> <tr> <td colspan="3">기타</td> <td></td> <td>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td> </tr> </table>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p>5. 철도, 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p> <p>(산정방법)</p> <p>점용면적 가격의 100분의 8</p>	<p>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p> <p>(산정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692 1370 1241 1595"> <tr> <th colspan="2">기준단위</th> <th rowspan="2">점용료</th> </tr> <tr> <th>점용단위</th> <th>기간단위</th> </tr> <tr> <td>점용면적 1m<sup>2</sup></td> <td>1년</td> <td>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td> </tr> </table>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용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용면적 1m <sup>2</sup>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p>6. 지하도, 지하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p>	<p>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p>																					

현행	개정(안)																			
<p>(산정방법)</p> <p>점용면적 가격의 100분의 10. 다만, 기존주택에 부설된 지하실로써 당해 지하실의 설치후 도로의 지하로 된 경우에는 점용면적 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p>	<p>(산정방법)</p> <table border="1"> <tr> <td rowspan="3">건축물</td> <td>1층인 건축물</td> <td rowspan="3">점용면적 1㎡</td> <td rowspan="3">1년</td> <td>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td> </tr> <tr> <td>2층인 건축물</td> <td>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td> </tr> <tr> <td>3층이상이 건축물</td> <td>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td> </tr> <tr> <td colspan="4">공중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td> <td>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td> </tr> <tr> <td colspan="4">육교상가, 기타</td> <td>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td> </tr> </table>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이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육교상가,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이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육교상가,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p>7. 도로 인접 지역에서의 건설공사를 위한 자재등의 적치를 위한 점용</p> <p>(산정방법)</p> <p>점용면적 가격의 100분의 20</p>	<p>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p> <p>(산정방법)</p> <table border="1"> <tr> <td>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 가로 판매대</td> <td rowspan="2">점용면적 1㎡</td> <td rowspan="2">1년</td> <td>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td> </tr> <tr> <td>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td> <td>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td> </tr> </table>	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 가로 판매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 가로 판매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p>8. 돌출간판 및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도로상의 공간점용</p> <p>(산정방법)</p> <p>점용면적 가격의 100분의 6</p>	<p>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 기타</p> <p>(산정기준)</p> <table border="1"> <tr> <td>일시점용한 것</td> <td rowspan="2">점용면적 1㎡</td> <td>1일</td> <td>300</td> </tr> <tr> <td>기타</td> <td>1년</td> <td>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td> </tr> </table>	일시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30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일시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30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p>9. 차광막 및 이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p> <p>(산정방법)</p> <p>점용면적 가격의 100분의 5</p>	<p>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p> <p>(산정기준)</p> <table border="1"> <tr> <td>점용면적 1㎡</td> <td>1년</td> <td>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td> </tr> </table>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현행	개정(안)								
<p>10.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위한 점용</p> <p>(산정방법)</p> <p>점용면적 가격의 100분의 8. 다만, 주택의 경우 및 지하도등에 첨가된 물건인 경우에는 점용면적 가격 또는 표시면적에 상당하는 점용면적 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p>	<p>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p> <p>(산정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699 409 1248 590"> <tr> <td data-bbox="699 409 905 504">농업, 주택및 식물재배</td> <td data-bbox="905 409 974 504">점용 면적</td> <td data-bbox="974 409 1042 504">1년</td> <td data-bbox="1042 409 1248 504">토지가격에 0.005 를 곱한 금액</td> </tr> <tr> <td data-bbox="699 504 905 590">기타</td> <td data-bbox="905 504 974 590">1㎡</td> <td data-bbox="974 504 1042 590"></td> <td data-bbox="1042 504 1248 590">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td> </tr> </table>	농업, 주택및 식물재배	점용 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05 를 곱한 금액	기타	1㎡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농업, 주택및 식물재배	점용 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05 를 곱한 금액						
기타	1㎡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p>(비고)</p> <p>1. 제1호의 점용에는 우편함, 공중전화박스 등을 위한 도로의 점용을 포함하며, 전주에는 통신 전주를 포함한다.</p> <p>2. 제3호의 점용에는 일시적인 광고막 아치식 공작물 또는 노상 입간판등을 위한 도로 점용이 포함된다.</p> <p>3. 제10호의 점용에는 노점, 지하상점, 각종 공작물, 건축물, 육교 및 식물재배를 위한 도로의 점용이 포함된다.</p>	<p>※ 비고</p> <p>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출 평균가격으로 한다.</p> <p>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p> <p>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의 1㎡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 길이, 표시면적등이 1㎡ 또는 1m 미만인 경우에는 1㎡ 또는 1m로 산정한다.</p> <p>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부분의 합계면적을 말한다.</p> <p>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 단위가 1년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부과한다.</p> <p>(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 1,445원→1,400원, 1,995원~1,950원)</p> <p>6. 위 표의 제1호에는 수도, 하수도, 가스, 송유, 송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중 관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한다.</p> <p>7. 위표의 제3호에는 같은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8. 위표의 제6호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현행	개정(안)
	<p>가.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전주, 전주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이외의 점용물</p> <p>나. 제4호, 제5에서 규정한 점용물</p> <p>다.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이외의 점용물</p> <p>라.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일시 설치한 것” 이외의 점용물</p> <p>마.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 이외의 점용물</p> <p>9.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p> <p>10. 위 표중 제7호에서 점용물중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는 점용료 산정총액이 연간 700,000원을 초과할 때는 700,000원으로 한다.</p> <p>11. 위표상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직각변동율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내에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p>

[별 표 2]

점용료 조정산식 (제5조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남 부 합 점 용 료
10% 이상 2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0}]
20% 이상 5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 이상 10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 이상 20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 이상 500%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 이상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0}]